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9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신동욱・박준태・조배숙

서천호 · 윤한홍 · 강대식

엄태영 • 박상웅 • 배준영

구자근 • 이상휘 • 박정하

인요한 • 이만희 • 진종오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콘텐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 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5</u>	<u>2028년</u>
<u>년 12월 31일</u> 까지 제1호 각 목	12월 31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	
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	
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	
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